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4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1995. 3. 1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경기세정 13403-12('95. 1. 4)호와 동세정 13400-328('95. 2. 20)호에 의거 조례준칙(안) 시달로 부분개정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납기한 외에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함. (안 제7조)
-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합의 세율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조정함. (안 제15조)
-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균등합)와 사업소세(재산합)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지방세법에서 정함. (안 제16조, 제61조)

- 1994년말로서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 조정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비과세 대상을 감면대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 (안 제17조, 제19조, 제49조, 제50조2항, 제53조, 제54조제1항, 제63조)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9조, 제9조의2, 제30조 내지 32조, 제184조, 제188조1항제2호3목, 238조의2, 제243조, 제266조, 제279조, 제290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한다.

동조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하며, “납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한다.

동조제2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고, “대하여 3개월”을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로 하며,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제3항중 “납기한의”를 각각 “기한의”로 하고, “납기한의 연장기한내”를 “연장된 기한내”로 하고, “납기한을 인정”을 “다시연장”으로 한다.

동조제5항중 “납기한의”를 “신고납부기한의”로 하고,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2,5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동조제1항제2호중 구분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고, “시 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고 “시 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며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으로 하고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하며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으로 하고,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비과세 및 감면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며,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한다.

동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을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 ”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중 “법 제202조제1항의”를 “법 제9조의2의”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제29조 내지 제32조의”를 “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로 한다.

제49조중 “법 제234조의14 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를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를 “법 제234조의12의”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각각 “비과세”로 한다.

제53조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의 규정”을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하며, “비과세”를 각각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63조중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납부 또는 납입기한의</u>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u>납기한</u>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u>기한의</u> <u>기한이 만료</u> <u>되기 전</u> ②..... <u>기한의</u> <u>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u> <u>연장할 수 있다.</u>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납기한의</u>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그</u> <u>납부 또는 납입기한을</u> 연장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납기한의</u>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u>납기한의</u>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u>납기한의 연장기한</u> 내에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납기한을 인정</u>할 수 있다. ④(생략) ⑤<u>납기한의</u>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③..... <u>기한의</u> <u>기한의</u>..... <u>연장된 기한내</u>..... <u>다시 연장</u> ④(현행과 같음) ⑤<u>신고납부기한의</u>..... <u>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u>																
제15조(세율) ①(생략)	제15조(세율) (현행과 같음)																
1. 개 인 : 2,500원	1. : 3,000원																
2. 법 인	2.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액</th></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td><td>(500,000원)</td></tr> <tr> <td>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 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td><td></td></tr> </tbody> </table>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00,000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 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액</th></tr> </thead> <tbody> <tr> <td>.....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td><td>(..... ...)</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td><td></td></tr> </tbody> </table>	구분	세액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00,000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 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구분	세액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구 분	세 액
..... (과세기	(.....
<u>준일 현재의 자본금액)</u>	...)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 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현행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는 시 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35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는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는 시 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20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는 시 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는 시 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100,000 원)
기타법인	(50,000 원)

② (생략)

개정안	
구분	세액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납기등) ①주만세 균등함의 납기는 매 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며 소득함 은 수시 부과한다.	(삭 제)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 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 지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 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9조(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제19조(구관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 법 제184조의3제2항제6호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법 제266조의3항 및 제4항에서 “구관사업 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 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관사업용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 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 한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 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지역”.....

현행	개정안
제24조(건설기계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 2. 건설기계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건설기계가 과세건설기계로 된 때 5. 과세건설기계가 비과세건설기계로 된 때	(삭 제)
제31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종지의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제32조(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u>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u>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내지 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생략) ②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율 <u>비과세</u> 또는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u>비과세 또는 감면대상</u>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 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4조의12의 <u>비과세</u> <u>비과세</u>
제5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율 <u>비과세 또는 감면</u>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u>비과세</u>

현행	개정안
제54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u>비과세</u>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u>비과세</u>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238조의2, 법 제279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 <u>비과세</u> 또는 감면 <u>비과세</u> 또는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납기) 재산환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u>비과세</u> 또는 <u>감면</u>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u>비과세</u> 1. ~ 6. (현행과 같음)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5. 3. 23

나. 제안자 : 부천시장